

대구지방법원 2018. 9. 19 선고 2018가단6843 판결 [점유회수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득환

변론 종결 2018. 8. 22

판결 선고 2018. 9. 19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을 인도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C과 이 사건 건물 등의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성하였고 그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이를점유하고 있었는데, 피고가 원고의 대표자인 D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인도 판결(대구지방법원 2015가단42688)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강제로 인도집행하였는바, 이는 민법 제320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민법 제204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2. 판단

을 제1,2, 4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,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이현석

별지